

## 뉴욕 주민 여러분,

뉴욕 주는 사회보장연금, 생활 보조금, 또는 섹션 8과 같은 주택 바우처로부터의 소득을 사용하여 거주비를 지불하는 뉴욕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득원천” 법을 시행합니다. 임대인이 귀하의 합법적 소득원천때문에 귀하를 차별하는 경우,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거주자가 주거를 신청하거나 거주비를 지불할 때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민권리국(Civil Rights Bureau)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드림

*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 지원

###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시민권리국 (Civil Rights Bureau)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civil.rights@ag.ny.gov](mailto:civil.rights@ag.ny.gov)  
[ag.ny.gov/bureau/civil-rights](http://ag.ny.gov/bureau/civil-rights)  
(212) 416-8250

직통 전화:  
(800) 771-7755

청각 장애 지원:  
(800) 788-9898

신고 양식:  
[ag.ny.gov/source-income-discrimination-form](http://ag.ny.gov/source-income-discrimination-form)

### 뉴욕 주 인권국 (Division of Human Rights)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Y 10458

지역 사무소 찾기:  
[dhr.ny.gov](http://dhr.ny.gov)

(718) 741-8400

## 소득원천 차별

### 지역 공정주거권 보호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2019년 4월 12일, 뉴욕 주는 어떤 뉴욕 주민도 합법적 소득원천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뉴욕 주 인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법은 뉴욕 주 내의 거의 모든 주택 종류에 적용됩니다.

## 본 법은 귀하가 받는 합법적 소득의 종류때문에 귀하의 주거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사회보장연금, 모든 형태의 정부 보조금, 또는 아동 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가 아닌 합법적 소득을 갖는 이들이 종종 소득원천 차별의 표적이 됩니다.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합법적 소득원천 보호를 실시합니다. 합법적 소득원천때문에 차별받은 경우, [ag.ny.gov/source-income-discrimination-form](http://ag.ny.gov/source-income-discrimination-form)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원천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 모든 형태의 연방, 주(州), 또는 지방 생활 지원금 (현금 지원이 이에 해당함);
- 모든 형태의 연방, 주(州), 또는 지방 주택 바우처 (섹션 8 바우처가 이에 해당함);
- 아동 지원금;
- 이혼 수당;
- 위탁 보호 보조금;
- 사회보장 또는 부가수입보장 (SSI); 또는
- 모든 기타 형태의 합법적 소득이나 정부 보조금

### 대부분의 부동산이 뉴욕 주 인권법 2019년 4월 개정에 포함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주가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가정;
- 모든 거주자가 동성(同性)으로 이루어진 대학교 기숙사나 하숙집과 같이, 동성(同性)인 개인들을 위한 건물 내의 방 임대; 및
- 고령자를 위한 주택.

주거 단위(housing unit)를 임대 또는 판매하려는 이는 모두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유주, 관리 회사, 중개인, 부동산 중개업자, 조합 이사회 및 아파트(condo) 협회가 포함됩니다. 차별 행위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목록이나 광고: “섹션 8 불가/DSS 불가/SSI 불가,” “지불 프로그램 불가,” 또는 “아파트가 바우처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합법적 소득원천 이용을 이유로 하여 주택 임대, 판매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절하는 것; 또는
- 소득원천에 따라 거주자에게 다른 조건이나 특혜를 제공하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옥상 파티오.

### 차별 행위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시도 소득원천 차별의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아파트 분양 자격을 계산할 때, 가계 구성원의 사회보장연금 수입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 잠재적 임차인이 임대 지원 바우처를 이용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중개인은 임차인을 조건이 더 열악한 아파트로 유도한다;
- 중개인이 잠재적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고용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는
- 임대인이 귀하의 소득원천때문에 광고된 임대료를 인상한다.

### 추가 정보와 서류는 저희가 귀하의 소득원천 차별 신고를 조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귀하의 신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용한 서류 또는 문서의 예시입니다:

- 소득원천에 근거한 차별을 보여주는 광고, 목록, 또는 주택 신청서의 스크린샷 또는 사진
- 소득원천 차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소유주, 중개인, 또는 대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또는 기타 서면 상의 대화
-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 회사, 및 직책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에 신고를 제출하는 것에 더하여, [dhr.ny.gov](http://dhr.ny.gov) 에서 뉴욕 주 인권국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